

『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김재우, 권재욱, 김춘남, 박교상, 송용자, 안장환,
안주찬, 이선우, 이지연, 장미경, 홍난이 의원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2월 3일

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재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탁·운영 규정을 신설·정비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 - 구미시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 → 구미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
- 인문학 사업의 위탁·운영(안 제16조 신설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0. 1. 13. ~ 1. 2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명칭을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에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, 인문학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사전에 집행기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구미시 인문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